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2027)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2027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통합 경기도 단체관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 영문명: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7(CES 2027)

○ 개최기간 : 2027. 1. 6. ~ 1. 9. / 4일간

○ 전시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 전시품목 : 가전, IT, 통신 등 소비가전 및 정보통신 품목

○ 전시주최 :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CTA)

○ 홈페이지 : <https://ces.tech>

○ 전시특징

-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전자제품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전시회임.
-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바이어, 언론 등이 대거 참가하여 신제품 발표, 투자유치, 비즈니스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파트너 발굴에 효과적인 플랫폼임.

2. 기업모집 및 지원내용

○ 모집기간 : 2026. 6. 23.(월) ~ 7. 14.(화) 까지

○ 지원규모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경기도, 시군, 대학 등 통합 경기도관(40개사내외) 형태로 운영 예정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기업별 5~6m² 내외, 공용공간 별도) 및 부스장치비 70% 이내

- 전시품 편도운송비(기업당 해상운송 최대 1CBM 이내)

- 사전교육, 공동통역 및 현장 지원, 미디어 홍보 등

* 운송현황 및 물품 특성에 따라 동일 예산 내 항공운송 등으로 운송방법 변동 가능

○ 업체참가비 : 약 470만원 내외(부스임차 및 장치비의 30%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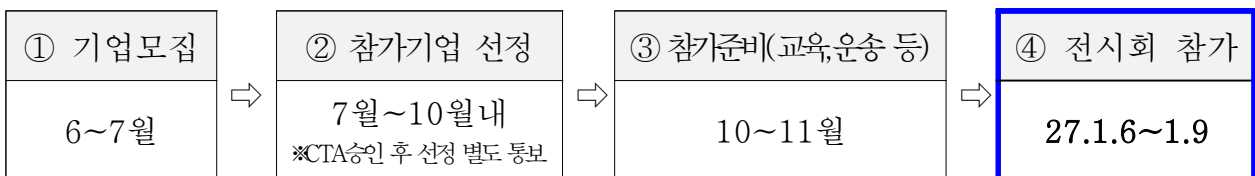
* 업체참가비는 추후 환율 변동 및 전시회 운영상황에 따라 확정 예정임.

- 통역비, 항공료, 해외체제비 및 여행경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개별장치 옵션, 추가 장치비용 등은 참가업체 부담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스타트업) (아래 모두 해당해야함)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②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③ 영문 온라인 홈페이지 보유기업(전시 참가 제품 업로드 필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서류 제출

< 온라인(경기기업비서, (구)이지비즈) 신청 방법 >

①로그인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서류준비	상단 「나의 지원사업」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제출서류 목록 준비 후 하단에 있는 「문서등록」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Tip!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 가능
③서류등록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검색창에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전자제품전(CES) 단체관 참가 기업 모집」 검색, 모집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서 끌어오기)
④신청확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Tel. 031-259-6299) * 공장등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장등록정보 입력 * 수출실적 항목은 미국 달러(USD)기준으로 작성, 무역협회 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으로 작성해야만 평가됨

○ 제출서류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에 아래 서류 미리 등록)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전시품목상세서	붙임1
2	(필수)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서약서	붙임2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4	(필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1
	(필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붙임4-2
5	(필수) 시장성평가 신청내역서(엑셀파일)	붙임 5
6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7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일기준, 기간 유효건*	
8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필수) 영문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필수) 2025년 1월~12월 전기간 직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전년도건 미발급 기간시 전전년도건 제출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 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1	(필수) 영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 전시 제품 업로드 화면 캡처본 포함	
12	(해당시) 공장등록증 사본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일 경우 제출 필수*	평가자료
13	(해당시) 외국어 카탈로그 파일 *기업, 전시품 카탈로그*	평가자료
14	(해당시) 해외규격인증서 *별첨3 인증서 중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평가자료
15	(해당시) 국내특허 사본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평가자료
16	(해당시) 공공인증서 *별첨3의 공공인증서 평가항목 참고*	평가자료

※ 타 기관에 제출한 서류 인정 불가. 반드시 [붙임] 양식에 신규 작성하여 제출

※ ⑫부터 ⑯ 모두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만 인정

< 전년도(`25년) 수출증명서 발급 방법 >

① 한국무역협회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 → 발급신청)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②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 카테고리 중 '수출입신청' 클릭
- 증명서 유형 선택
- 전년도(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설정 및 각종 조회 조건 설정 후 클릭
- '증명서 주문하기' 버튼 클릭 후 결제 후 프린트 발급

○ 시장성 평가 자료

- '시장성평가 신청내역서(붙임5)' 작성 후 제출
- 외국어 카탈로그 첨부시 시장성 평가 자료로 활용됨

○ 선정 방법

- **[예비선정]** 경기도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 1차 선정
- **[최종선정]** 1차 선정 기업 대상으로 CTA 승인 요청 후 승인 확정된 기업 대상으로 고득점 순 최종 선정

※ 예비선정 후 CTA 신청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CTA승인이 지연될 경우 CTA승인 결과에 따라 승인 확정된 기업 선착순 선정 (CTA 승인기준 별첨1 참조)

○ 경기도 범위반사실 여부 확인방법

- IV 납세 부분은 신청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해야 하며, I 공정, II 노동, III 환경 분야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는 신청 이후 경기도에서 직접 조회함(아래 표 참고)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② 하도급법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③ 표시광고법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법위반사실 조회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⑤ 산업안전보건법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⑦ 대기환경보전법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⑧ 소음진동관리법	신청 발급
	⑨ 물환경보전법	(조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⑪ 지방세기본법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3. 유의사항

○ 참가제한 및 유의사항

- 평가점수 감점(-20)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의거
 - *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당해 연도(2026년) 해외 G-FAIR 참가,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중 총 3회 초과 참여 기업
- 과거 경기도 사업 참가 시 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선정 제외

- 직전 2년간 동일 전시회에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동사업)」으로 연속 선정 및 참여한 기업
- 금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동사업)」 선정 및 참여한 기업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 참가 제한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 지원사업에 대한 참가 제한 및 참가비 환불 불가 적용
 - 1)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2)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1년간
 - 3) 면제사유(하단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포기 신청서(별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가 제한기간동안 공고 중이거나 공고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 불가

* 참가 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 (예시) 참가제한기간이 12.14.까지인 경우 12.13.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동일 전시회 참가 건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 받는 경우

- 참가직원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로 참가한 기업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등 사유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 사유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포기기업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 자료 제출, 1개월 경과 시 경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제재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4. 기 타

- 출장자 통역비,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 및 세금 등은 참가기업 부담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컨벤션팀 송승인 차장
- Tel : 031-259-6123 / Email : sis@gbsa.or.kr

별첨 1. 2027 CES 참가자격 기준(주최측 참가승인조건)

○ 참가자격(주최측 참가승인 조건) : CTA 참가승인을 득한 기업만 참가가능

참가위치	CTA 승인기준 및 승인 소요기간 (2026년 지원기준이며, 2027년 변경될 수 있음)
Eureka Park	<p>CTA는 스타트업을 운영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 설립된 지 5년 미만 또는 첫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로 정의함. CTA defines a startup as a company in its early stages of operations, less than five years old, or launching its first product. CTA will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when reviewing applica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 The technology displayed must be applicable to the consumer technology space. 2.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적이 없어야 함. The company's product and/or service must not have shipped or been on the market prior to January 1, 2026. 3. 전시될 기술은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가진 시제품, 제품, 또는 서비스야 함. OEM/ODM, 공급자 또는 부품은 안되며, 클라우드 펀딩이나, 사전 주문 및 베타 단계 제품도 참가 가능함. Technology displayed must be a prototype, product or service under own brand name(s). No OEM/ODM, supplier, or component products. Crowdfunding campaigns, pre-orders and beta stage are allowed. 4.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레카 파크에서 2번째 참가 가능함. Alumni companies may be eligible for a second year in Eureka Park if the product has not launched and all other entry requirements are met. 5. 회사는 알려진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어야함. Company has no known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s. 6. 제품 또는 서비스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잠재력을 지닌 혁신성이 있어야함. CTA는 참가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Product or service must be innovative with the potential to make a profound impact on the market. CTA reserves the right to approve or disapprove entries. <p>CTA는 상기 출품물 기준/공간 계약을 준수 하지 않는 전시자들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 CTA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exhibitors who do not adhere to these entry criteria and/or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space contract.</p>
	<p>(심사 소요기간) 최대 4주 소요 예상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늘어 심사소요시간 증가) *단, 보완 요청시 재송부(CTA→참가기업) 1주, 재심사 후 확정 까지 최대 2-3주 추가 소요예상</p> <p>(CTA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설립년도, 제품출시 시점, 제품의 소비자 시장 적용여부 등) - 신청 기업의 전시품이 업로드 되어 있는 (영문)웹사이트 필수 심사 *웹사이트상에 제품출시가 처음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설명(Products Description), 회사 소개 등 영문내용 확인</p>

별첨 2. 2026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최대
		총 계					100
기업 기본 (45)	경기도 소재 여부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	본사 경기도 소재(2.5)					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					20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수출경험 및 수출액 규모(5)					
		진출지역에 대한 수출기반(5)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점/건 * 별첨 3 인증서 중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4	
국내 특허 취득	특허 2점/건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수출 신인왕(5), ▲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3), ▲ 경기도 수출 기회 바우처 참여기업(3), ▲ (최근3년) G-FAIR KOREA 어워즈 수상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 경기도 착한기업(2)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2),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2), ▲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2), 경기 임팩트 유니콘(2), ▲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2), ▲ 경기도 노사상생 우수기업(2), ▲ 원산지인증수출자(2), ▲ 성과공유기업(1),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1),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1)					12
수혜이력 (5)	직전 2년('24, '25) 경기도 통상시책 참여이력	신규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5	4	3	2	1	
수출실적 (20)	전년도('25) 수출액*	수출초보기업(100만불 미만)			20		20
		100만불 이상			10		
시장성 (30)	전시 참가 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제품 현황 및 수출 일반 현황(10)					30
		전시회 마케팅전략(20)					
참가 제한	· 직전 2년간 동일 전시회에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으로 연속 선정참여한 기업 · 「2026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동사업)」 선정 참여한 기업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불법 사항 발견된 경우					탈락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관련, 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 당해 연도 해외 G-FAIR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중 총 3회 초과 참가 기업 · 과거 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 20점	

* 수출실적 항목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시 전전년도(2024) 수출증명서 제출

* 참가제한 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5쪽 참고

별첨 3.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

국가별 (지원건수)	규 격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 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 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 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 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전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 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국가별 (지원건수)	규 격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 PMDA (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HOSPA (일본위생수지협회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과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 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1)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국가별 (지원건수)	규 격		
인도(12)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전선인증)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허가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r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 관리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3)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국가별 (지원건수)	규 격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 레이트(2)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80)	AEC-Q (자동차용 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 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 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별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 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산물규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 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 규격)
	PDI (배관, 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